

|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 | | | | 파인만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u>실제 수익률 변동성을</u> 감안하여 <u>1등급으로</u>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파인만 차이나Bull 1.5배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인만 차이나Bull 1.5배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 **파인만 차이나Bull 1.5배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집합투자업자 명칭 : 파인만자산운용주식회사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feynma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기준일 : 2021년 07월 02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년 07월 15일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5.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판매하기 위한 증권투자상담사 자격과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만이 투자 권유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주식관련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 효과를 일으켜 위험**

노출 수준을 순자산의 1.5배 수준으로 유지하므로 일반 주식형 투자신탁에 비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년 05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14.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15.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법(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이하, 이 항에서 “법”) 및 이와 유사한 미국 내의 어떠한 법에 의하여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법, 미국 내국세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또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아래 5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 ②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 ③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 ④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 ⑤ 미국인(위 제1호에서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 IRC Section 1471 내지 1474에 따른 FATCA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이하 “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 외국법인(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니다.

<간이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1.07.02.)

파인만 차이나Bull 1.5배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펀드코드: 98324)

|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파인만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 등의 편입으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환율변동 위험, 환헤지위험, 인덱스 투자위험, 레버리지 위험, 누적수익률과 괴리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년 05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요약정보는 파인만 차이나 Bull 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인만 차이나Bull 1.5배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주로 투자하여 HSCEI 일일 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중국관련 기업의 주식, 이와 관련된 주가지수 선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유동성자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HSCEI 일일 등락률의 1.5배 수준을 추종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 | | | | | | | | | |
|-----------------------------------|--|-------------------------|----------|-----------------|----------------|----------------|---|------------|-------|-------|-------|
| 분류 | <p>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p> <p>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2조제7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숙려기간 등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p> <p>주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년 05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p> | | | | | | | | | | |
|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 판매수수료 | | 총보수 | 판매 보수 | 동종 유형 총보수 | 총 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수수료선택- 오프라인형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1.470% | | 0.800% | 0.900% | 1.6149% | 264 | 432 | 605 | 969 | 1,992 |
| 수수료미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형 (C1) | 없음 | 2.170% | 1.500% | 1.600% | 2.3275% | 239 | 466 | 661 | 1,050 | 2,219 | |
| 수수료선택- 온라인형 (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 1.020% | 0.350% | 0.610% | 1.1642% | 169 | 291 | 419 | 688 | 1,457 | |

| | | |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 (C-e) | 없음 | 1.570% | 0.900% | 1.240% | 1.7153% | 176 | 357 | 545 | 938 | 2,038 |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모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 등 포함,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 | | | | | | | | | |
| (주2) 보수체감형(CDSC)클래스의 경우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정보는 1년차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1,000만원 투자시 투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기간경과에 따른 판매보수인하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 | | | | | | | | | |
| (주3) 종류 A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주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41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 | | | | | | | | | |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이후 |
|----------------------------|--------------------|------------|------------------------|------------------------|------------------------|------------------------|-------|
| | | | 20.05.21 ~ 21.05.20 | 19.05.21 ~ 21.05.20 | 18.05.21 ~ 21.05.20 | 16.05.21 ~ 21.05.20 | |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 2011-01-20 | 14.58 | -0.42 | -7.93 | 7.39 | -3.31 |
| | 비교지수 | 2011-01-20 | 17.22 | 1.34 | -7.06 | 7.01 | -5.09 |
| | 수익률변동성(%) | 2011-01-20 | 29.16 | 29.58 | 28.92 | 29.16 | 29.16 |

(주1) 비교지수 : 전일 비교지수*{1+(당일 HSCEI 일일 등락률*1.5-한국은행 기준금리/365*5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신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 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개, 억원)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 60 주식파생형) (%) | | | | 운용 경력 년수 (년) | |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 운용 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 | 최근 1 년 | 최근 2 년 | 최근 1 년 | 최근 2 년 | | |
| | 박진환 | 1965 | 책임운용인력 | N/A | N/A | N/A | N/A | 11.81 | -2.63 | 0.00 | |
| ■ 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인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T1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
|-------------|--|

-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투자 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자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주된 투자전략으로 이용하므로 일반 주식형 투자신탁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파생상품 투자위험을 내포합니다. |
| | 환율변동 위험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 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환헤지 위험 |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화선물, 선물환등을 통해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환위험 제거를 추구하나, 통화선물을 활용할 경우 헤지단위 수량의 문제, 통화선물, 선물환의 거래시간과 해외시장의 거래시간 불일치,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완전 헤지는 불가능하며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자산 가격 변동 폭과 환율의 변동폭이 클수록 이러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의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투자신탁의 헤지전략은, 달러화와 원화로만 헤지하여, 해외통화 |

| | | | |
|--|---|---|---|
| | 와 개별국가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
| 인덱스 투자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 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레버리지(leverage)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Leverage)투자로 인해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상기 언급한 사유로 인해 주가하락시 일반 주식형펀드나 인덱스펀드에 비해 펀드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
| 누적수익률과 과리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이 HSCEI의 일간 변동률의 1.5배 수준이 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이는 일간단위로만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1.5배수로 추구하는 것이므로 투자기간 수익률의 1.5배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시행령 제2조제7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년 05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 | | |
| 매입방법 | 13시 이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13시 경과후: 4영업일 기준가 매입 (다만,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은 매입청구일을 기준으로 2020.10.05부터 시행) | 환매방법 | 13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로 6영업일 지급 13시 경과후: 4영업일 기준가로 7영업일 지급 |
| 환매수수료 | 없음 | | |
| 기준가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feynma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 과세 | 구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전환절차 및 방법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①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③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
| 집합투자업자 | 파인만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03-9800/ 인터넷 홈페이지: www.feynmanasset.com) | | |
| 모집기간 |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
| 효력발생 | 2021년 07월 15일 | 준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일 |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feynma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9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1개월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1개월 |
|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보수체감 (CDSC)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 기관(f) |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feynma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feynman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feynmanasset.com)

<목차>

| | |
|---|----|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2 |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12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12 |
|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2 |
| 4. 모집(판매)의 내용 및 절차 | 12 |
| 5. 인수에 관한 사항 | 13 |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13 |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 14 |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14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14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15 |
| 4. 집합투자업자 | 15 |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16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17 |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19 |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19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 24 |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29 |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35 |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 39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41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44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구실적 등에 관한 사항 | 48 |
| 1. 재무정보 | 48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51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 53 |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59 |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59 |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61 |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61 |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62 |
|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63 |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63 |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64 |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64 |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67 |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68 |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72 |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73 |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

[별첨]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항셍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지수) 사용 유의 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파인만 차이나Bull 1.5배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 98324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 98325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 AB908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 98326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 98327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 98328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 98329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기관형(C-f) | 98330 |
| 수수료미정구-온라인형(C-e) | 98331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랩형(C-w) | 98332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AP209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파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함 (법 시행령 제2조제7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
-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년 05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판매)가 가능합니다.

-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판매)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판매)기간 : 추가형으로서 모집개시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나. 모집(판매)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www.feynmanasset.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중 “매입, 판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파인만 차이나Bull 1.5배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 98324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 98325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 AB90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 9832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 9832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 9832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 9832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 98330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98331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 98332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AP209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변경 사항 |
|------------|--|
| 2011.01.20 | 최초설정 |
| 2012.06.05 |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및 법 개정(2011.8.4) 사항 반영 (수시공시 관련) 등 |
| 2012.07.10 | 종류A-e 수익증권 추가 등 |
| 2013.03.06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변경(모자형으로 전환)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 ING 차이나Bull 1.5배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 차이나Bull 1.5배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서식개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12.6.29)사항 반영 등 |
| 2014.01.07 | 자산운용회사 명칭 변경 및 이에 따른 펀드 명칭 변경 등 -“ING자산운용”에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으로 변경 -“ING 차이나Bull 1.5배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서 “맥쿼리 차이나Bull 1.5배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변경 |
| 2014.02.21 | 종류S 수익증권 신설,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및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2013.8.29)사항 반영 등 |
| 2014.12.30 | 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
| 2015.02.25 |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등 |
| 2016.02.26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반영 및 운용전문인력 변경 |

| | |
|------------|--|
| 2016.04.11 | 종류 C-w 가입자격 변경 |
| 2016.07.02 | 펀드 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및 위험등급 변경 |
| 2016.10.21 |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 |
| 2017.09.06 |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 |
| 2018.04.09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7.05.08 시행),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2017.05.08 시행), 결산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 |
| 2018.06.19 | 투자신탁의 운용본부 기재 |
| 2018.09.04 | 운용전문인력 변경 |
| 2019.08.23 | 기존 종류별 수익증권 명칭 변경 (종류C-i→ 종류C-f) |
| 2019.09.25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반영 및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
| 2020.09.30 |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2020.10.05 시행) 등 |
| 2021.05.08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 시행 반영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년 05월 10일부터 적용됨)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2021년 05월 07일 시행) 반영 |
| 2021.05.13 | 자산운용회사 명칭 변경 및 이에 따른 펀드 명칭 변경 등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서 “파인만자산운용”으로 변경 -“맥쿼리 차이나Bull 1.5배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서 “파인만 차이나Bull 1.5 배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으로 변경 |
| 2021.06.15 | 운용전문인력 변경,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 |
| 2021.07.15 | 운용전문인력 변경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개별투자자의 저축기간 혹은 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파인만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SIMPAC 빌딩 3층 (대표전화 : 02-3703-9800) |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1년 7월 기준)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개, 억원)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 60 주식파생형) (%) | | | | 운용 경력 년수 (년)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 운용 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 |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1년 | 최근 2년 | | | | |
| 박진환 | 1965 | 책임운용 인력 | N/A | N/A | N/A | N/A | 11.81 | -2.63 | 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파인만자산운용 대표이사 (2021.06~현재) - 한국투자증권 랩상품부 부서장 (2018~2021) -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품본부장 (2014~2017) - 고려대학교 국제경영학 석사 - 고려대학교 무역학 학사 | | |
| ■ 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인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TI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주 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 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상기 자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과 동일합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책임운용인력 | 운용 기간 |
|--------|-------------------------|
| 장현준 | 2014.12.30 – 2016.02.29 |
| 이영탁 | 2016.03.02 – 2018.09.03 |
| 노승원 | 2018.09.04 – 2021.06.14 |
| 박병호 | 2021.06.15 – 2021.07.14 |

| | |
|---------|-------------------------|
| 박진환 | 2021.07.15 – 현재 |
| 부채임운용인력 | 운용 기간 |
| 정성엽 | 2018.09.04 – 2021.06.14 |

주)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년 05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1개월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1개월 |
| 판매 경로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보수체감 (CDSC)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 기관(f) |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2) 수익증권 종류별 차이점

| 종류 | 수수료 | | | 보수(연, %) | | | |
|-----------------------|---------------|----------------|----|----------|--------|--------|----------|
| | 선취판매 | 후취판매 | 환매 | 집합 투자 | 판매 | 신탁 | 일반 사무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 | - | 0.6000 | 0.8000 | 0.0550 | 0.0150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 | 0.6000 | 0.3500 | 0.0550 | 0.0150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 - | - | - | 0.6000 | 1.5000 | 0.0550 | 0.0150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 - | - | - | 0.6000 | 1.3500 | 0.0550 | 0.0150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 - | - | - | 0.6000 | 0.9900 | 0.0550 | 0.0150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 - | - | - | 0.6000 | 0.9000 | 0.0550 | 0.0150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기관형(C-f) | - | - | - | 0.6000 | 0.0500 | 0.0550 | 0.0150 |
| 수수료미정구-온라인형(C-e) | - | - | - | 0.6000 | 0.9000 | 0.0550 | 0.0150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랩형(C-w) | - | - | - | 0.6000 | 0.0000 | 0.0550 | 0.0150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 |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0.6000 | 0.3000 | 0.0550 | 0.0150 |
| 지급시기 | 매입시 | 환매시 | | 매3개월 후급 | | | |

주1)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시 부과 됩니다.

주2) (선취·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투자신탁 | 모투자신탁 | 파인만 차이나Bull 1.5배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파인만 차이나Bull 1.5배증권자투자신탁 (주식-파생형) | | 모투자신탁 100%이하 투자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모투자신탁명 | 파인만 차이나Bull 1.5배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투자목적 및 전략 | HSCEI 지수의 일일 등락률의 1.5 배를 추종하여 수익추구 |
| 주요투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CEI 지수 관련 주식, 선물 및 ETF 등에 투자 - HSCEI 지수 선물을 이용하여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 효과를 일으켜 증권시장에 대한 위험노출수준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5 배 수준으로 유지 |
| 위험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환(forward) 및 통화선물(currency future) 병행을 통한 환헤지 수행, 거래상대방 분산 추구 - HSCEI 지수 선물의 베이시스 점검 - HSCEI 지수 대비 주식바스켓 최적화, ETF 의 과리 정도, 유동성 등 점검 등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 항셍중국기업지수) 관련주식 및 선물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HSCEI 일일 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일등락률의 1.5배는 기간수익률의 1.5배와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이는 투자자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결정 시 사전적으로 반드시 판매직원, 집합투자업자 등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주요 내용 |
|-----------------------------|--------|--|
| ① 모투자신탁수익 증권 | 100%이하 | 파인만 차이나Bull 1.5배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수익증권 |
|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매수 | 10%이하 | <p>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있음.</p> <p>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p> |

| | | | |
|---|----|--|----------------|
| ③ | 기타 |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적용예외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①의 투자비율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 분 | 내 용 | 적용 제외 |
|---------------|--|-------|
| 이해관계인 단기대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 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 |

다. 기타 제한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

-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닙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 | 투자비율 | 주요 내용 |
|------|------------------------------|---|--|
| ① | 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장 내파생상품 | 60% 이상 단, 해외주식에 의 투자는 투자 신탁 자산총액 의 60% 이상으 로 한다. | <p>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 된 것(한국거래소와 유사한 것으로서 홍콩에 소재한 시장에서 거래 되는 것에 한한다)(이하 “해외주식”이라 한다). 다만 해외주식은 다음 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또는 다음 다목 내지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를 말한다.</p> <p>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p> <p>나. 「증권거래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p> <p>다. 1호 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별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일 것</p> <p>라.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p> |
| ② | 채 권 | 40% 이하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u>A-</u>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
| ③ | 자산 유동화 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
| ④ | 어 음 |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

| | | | |
|---|----------------------------|--------|---|
| | | |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u>A2- 이상</u> 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어음”이라 한다) |
| ⑤ | 장내파생상품 | 10% 초과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
| | 장외파생상품 | |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
| ⑥ | 집합투자증권 등 | 40% 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금전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중국 주식시장과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
| ⑦ | 환매조건부 매도 |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로써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
| ⑧ | 증권의 대여 | 50% 이하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50% 이하 |
| ⑨ | 증권의 차입 | 20% 이하 |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
| ⑩ |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 매수 |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외화표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포함 |
| ⑪ | 기타 |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적용예외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①~⑤의 투자비율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간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①~⑤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적용예외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 ⑥~⑨, 아래 “나. 투자제한” 사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단기대출, 계열사 발행증권취득, 후순위채권 제한사항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상기의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 분 | 내 용 | 적용 제외 |
|-------------------------------------|---|--------------------|
| 이해관계인 단기대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 |
| 파생상품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
|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
| 동일법인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동일종목 투자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
| |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 |

| | |
|---------------|--|
| | <p>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함),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시가총액비중 까지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 계열사 발행증권취득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후순위채권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중국관련 기업의 주식, 이와 관련된 주가지수 선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유동성자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HSCEI 일일 등락률의 1.5배 수준을 추종하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파인만 차이나Bull 1.5배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운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HSCEI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투자전략의 기본으로 하지만 증권시장상황, HSCEI 주가지수선물 및 현물과의 가격차이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일일등락률의 1.5배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기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HSCEI 일일등락률의 1.5배의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 전략 및 위험관리 전략

(1)운용전략

- ① 기본 운용전략

- HSCEI 지수의 일일 등락률의 1.5배를 추종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주식 현물(H Share), 선물 및 ETF 등에 투자합니다.
 - HSCEI 지수 선물을 이용하여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 효과를 일으켜 증권시장에 대한 위험 노출수준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5배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HSCEI의 일일 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수익을 추종합니다. (이하 “1.5배 전략”)
-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나 거래량 부족 등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1.5배 전략을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기 설정금액이 적을 경우 계획된 포트폴리오 구성 불가, 투자신탁 비용 등의 발생으로 인해 일별 수익률이 비교지수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포트폴리오 구성

- 주식 현물 투자 및 ETF 투자

주식 현물에의 투자는 HSCEI 지수 구성종목을 복제하여 운용하며,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후 추적오차(tracking error)를 점검하여 추적오차를 관리 할 계획입니다.

ETF에의 투자는 HSCEI 관련 ETF에 투자하며 편입비 조절, 환매 대응 등 포트폴리오의 효율적인 관리에 활용합니다.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주가지수 선물 등)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로 투자신탁의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총액의 150%수준으로 유지하여 HSCEI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준을 추종하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 범위 이내에서 투자합니다.

- 주식 현물 포트폴리오(ETF 포함)와 주가지수 선물 편입비중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투자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운용상의 특징 및 투자자 유의 사항

1) 일일 지수 등락률의 1.5배 성과 추구

- **1.5배 전략은 “목표지수 일일 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성과를 추구합니다.**
- **일별 성과의 복리(Compounding)로 인해 특정기간 누적수익률을 1.5배 한 수익률과 다릅니다.**

| 일자 | 일일 등락률 | | | | 기간 수익률 | | |
|----|--------|---------|-------------|---------|--------|---------|---------|
| | 주가 지수 | | 주가 지수의 1.5배 | | 배율 | 주가 지수 | 1.5배 누적 |
| | 지수 | % | 지수 | % | | | |
| 1 | 10,000 | 0.00% | 10,000 | 0.00% | | | |
| 2 | 11,000 | 10.00% | 11,500 | 15.00% | 1.50 | 10.00% | 15.00% |
| 3 | 13,000 | 18.18% | 14,636 | 27.27% | 1.50 | 30.00% | 46.36% |
| 4 | 15,000 | 15.38% | 18,014 | 23.08% | 1.50 | 50.00% | 80.14% |
| 5 | 12,000 | -20.00% | 12,610 | -30.00% | 1.50 | 20.00% | 26.10% |
| 6 | 11,000 | -8.33% | 11,034 | -12.50% | 1.50 | 10.00% | 10.34% |
| 7 | 9,000 | -18.18% | 8,024 | -27.27% | 1.50 | -10.00% | -19.76% |
| 8 | 12,000 | 33.33% | 12,037 | 50.00% | 1.50 | 20.00% | 20.37% |
| 9 | 15,000 | 25.00% | 16,550 | 37.50% | 1.50 | 50.00% | 65.50% |
| 10 | 16,000 | 6.67% | 18,205 | 10.00% | 1.50 | 60.00% | 82.05% |

2) 레버리지로 인해 복리효과(Compounding) 증폭

- 1.5배 전략으로 복리투자시 이익 또는 손실이 더 빠르고 훨씬 큰 폭으로 발생합니다.
- 복리효과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손실을 더 확대 시킬 수 있습니다

| 상승국면 | 일자 | 일반펀드 | | 1.5배 전략 | | 기간수익률(복리) (%) |
|------|-----------|-------|-------------------|--------------|----------------------|---------------|
| | | 지수등락률 | 투자수익 | 지수등락률 * 1.5배 | 투자수익 | |
| 0 | 0 | 0% | 100 | 0% | 100 | |
| 1 | 1 | 10% | 110(=100*(1+10%)) | 15% | 115(=100*(1+15%)) | |
| 2 | 2 | 10% | 121(=110*(1+10%)) | 15% | 132.25(=115*(1+15%)) | |
| | 기간수익률(복리) | | 21.00% | | 32.2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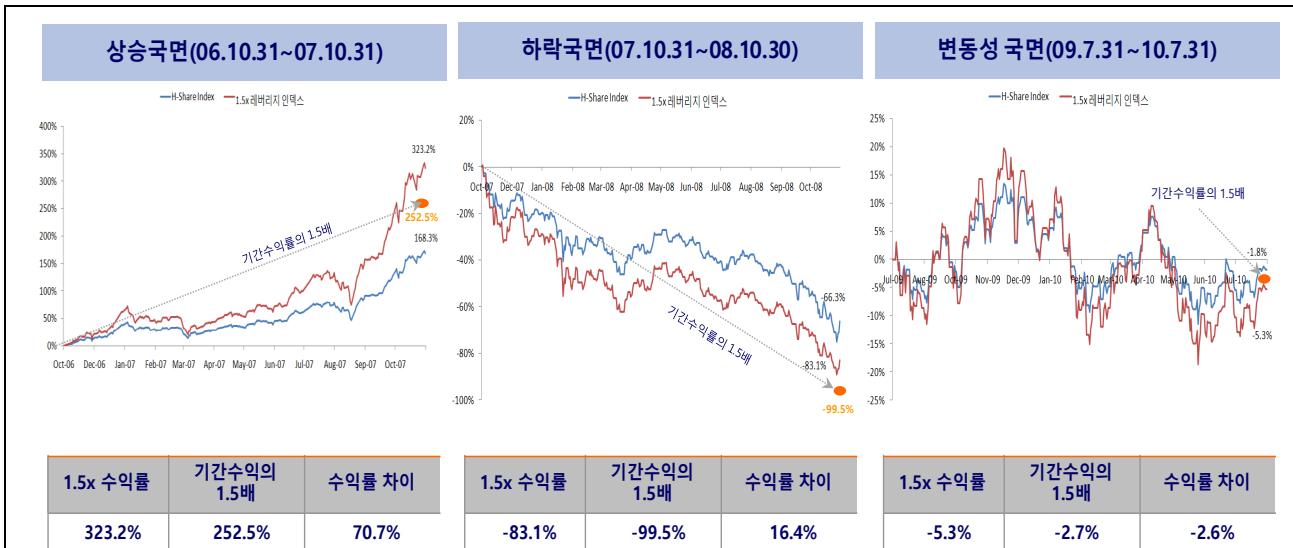
| 하락국면 | 일자 | 일반펀드 | | 1.5배 전략 | | 기간수익률(복리) (%) |
|------|-----------|-------|------------------|--------------|--------------------|---------------|
| | | 지수등락률 | 투자수익 | 지수등락률 * 1.5배 | 투자수익 | |
| 0 | 0 | 0% | 100 | 0% | 100 | |
| 1 | 1 | -10% | 90(=100*(1-10%)) | -15% | 85(=100*(1-15%)) | |
| 2 | 2 | -10% | 81(=90*(1-10%)) | -15% | 72.25(=85*(1-15%)) | |
| | 기간수익률(복리) | | -19.00% | | -27.75% | |

| 횡보국면 | 일자 | 일반펀드 | | 1.5배 전략 | | 기간수익률(복리) (%) |
|------|-----------|-------|-------------------|--------------|---------------------|---------------|
| | | 지수등락률 | 투자수익 | 지수등락률 * 1.5배 | 투자수익 | |
| 0 | 0 | 0% | 100 | 0% | 100 | |
| 1 | 1 | 10% | 110(=100*(1+10%)) | 15% | 115(=100*(1+15%)) | |
| 2 | 2 | -10% | 99(=110*(1-10%)) | -15% | 97.75(=115*(1-15%)) | |
| | 기간수익률(복리) | | -1.00% | | -2.25% | |

| 횡보국면 | 일자 | 일반펀드 | | 1.5배 전략 | | 기간수익률(복리) (%) |
|------|-----------|-------|------------------|--------------|--------------------|---------------|
| | | 지수등락률 | 투자수익 | 지수등락률 * 1.5배 | 투자수익 | |
| 0 | 0 | 0% | 100 | 0% | 100 | |
| 1 | 1 | -10% | 90(=100*(1-10%)) | -15% | 85(=100*(1-15%)) | |
| 2 | 2 | 10% | 99(=90*(1+10%)) | 15% | 97.75(=85*(1+15%)) | |
| | 기간수익률(복리) | | -1.00% | | -2.25% | |

3) 중국시장(HSCEI 지수) 국면별 1.5배 레버리지 성과 사례

- 상승 및 하락국면에서의 1.5배 전략의 수익률은 해당 기간수익률의 1.5배 보다 초과수익 시현
- 변동성국면(횡보국면)에서의 1.5배 전략의 수익률은 해당 기간수익률의 1.5배 보다 초과손실 시현



<참고: 투자대상 국가 현황 (중국)>

| 항목 | 단위 | 2017 | 2018 | 2019 |
|---------------|------|-----------|-----------|-----------|
| GDP | US\$ | 12조 3104억 | 13조 8948억 | 14조 3429억 |
| 1인당 GDP | US\$ | 8,879 | 9,977 | 10,262 |
| 경제성장률(GDP증가율) | % | 6.9 | 6.8 | 6.1 |

※ 출처: 통계청

(2) 위험관리전략

| 구분 | 내용 |
|------------------|--|
| 주식 포트폴리오 추적오차 | 투자 금액에 맞는 최적 주식포트폴리오를 구성, 추적오차 점검하여 HSCEI 지수와의 추적오차 관리 |
| 선물 베이시스 | H-share 지수 선물 베이시스 점검 |
| ETF 추적오차 | 주식거래비용 대비 효율성 여부, H-share 지수와의 괴리 정도, 유동성 등 점검 |
| 총편입비(레버리지)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리밸런싱 실행 원칙 • 리밸런싱 프로세스를 통해 총편입비(레버리지), 자산배분, 거래규모 등 점검 • 오퍼레이션과 유기적인 자금 관리 및 확인 |
| 환전 및 환헤지 | 선도환(Forward) 및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병행을 통한 포지션 관리 거래상대방 분산 추구 |
| 트레이딩 | 해외유가증권 전담 트레이더 배치 |

※ 환위험 관리 전략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관련 주식 및 주가지수 등에 투자할 경우 홍콩달러화 또는 미국 달러화 등으로 환전하여 투자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가치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도환거래 및 통화선물거래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합니다. 환해지는 외화자산의 100%±10% 수준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해지 비용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해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 방안을 모색하여 환해지할 예정입니다. 환해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환해지에 관한 사항

환해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외투자 펀드는 대부분 외화로 투자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투자기간 중에 환율이 떨어지면(원화가치 상승)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해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원화가치하락)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해지 실행으로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 구분 | 금액(원) (2020.01.20 ~ 2021.01.19) | 비율(%) (2021.01.19 기준) |
|--------|------------------------------------|--------------------------|
| 환해지 비용 | - | 94.76 |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계획은 이 투자신탁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전일 비교지수*{1+(당일 HSCEI 일일 등락률*1.5-한국은행 기준금리/365*50%)}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HSCEI 현물 및 선물에 투자하여 HSCEI 지수 일일 등락률의 1.5배 수준을 추종하는 전략을 수행하므로 상기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설명: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 Index: H주 인덱스)

- 홍콩주식시장(Hongkong Stock Exchange,HSE)에 상장된 중국기업주식(H-Share)이면서 HSCI(Hang Seng Composite Index)에 포함되는 40개 종목으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중 지수
- ▶ H-share: 일반적으로 중국정부 소유의 국유기업 또는 정부지분이 30%이상이면서 수익의 50%이상이 중국본토에서 발생하는 기업으로서, 홍콩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본토 상장기업의 주식을 말함. 주식의 액면통화는 중국본토 통화인 인민폐(Renminbi)이나, 홍콩시장에서 홍콩달러(HKD)로 거래되는 특징 있음.

- 해당지수에 대한 정보는 산출기관의 홈페이지(<http://www.hsi.com.hk>)등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Bloomberg Ticker : HSCEI Index)

* 비교지수 사용에 관한 유의 사항은 본문 마지막 페이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적극적인 매매전략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HSCEI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므로, 주식 및 장내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위험노출도를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5배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위험노출도 조정을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비교지수와의 추적오차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전략은 그렇지 아니한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매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 파인만 차이나Bull 1.5배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파인만 차이나Bull 1.5배증권자투자신탁 (주식-파생형) | 모투자신탁 100%이하 투자 |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인덱스펀드의 경우 지수와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나 이 투자신탁의 경우 장내파생상품(HSCEI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 지수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므로 HSCEI 지수가 하락할 경우 **동지수 일일하락률의 1.5배 수준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특히 주식 및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50% 수준으로 유지하는 고위험 상품으로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일반적인 주식형, 주식파생형 상품과 비교하여 투자자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운용자산의 가격 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모투자신탁에 투자되는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년 05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가. 일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해외 주식 및 관련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 및 어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주된 투자전략으로 이용하므로 일반 주식형 투자신탁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파생상품 투자위험을 내포합니다. |
| 장외파생상품위험 |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자에 투자 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 위험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

| | |
|----------|---|
| |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 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환헤지 위험 |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화선물, 선물환등을 통해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환위험 제거를 추구하나, 통화선물을 활용할 경우 해지단위 수량의 문제, 통화선물, 선물환의 거래시간과 해외시장의 거래시간 불일치,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완전 해지는 불가능하며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자산가격 변동 폭과 환율의 변동폭이 클수록 이러한 환차익 또는 환차손의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투자신탁의 해지전략은, 달러화와 원화로만 해지하여, 해외통화와 개별국가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부도 등의 위험 | 주식, 채권 및 어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누적수익률과 관리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이 HSCEI의 일간 변동률의 1.5배 수준이 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이는 일간단위로만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1.5배수로 추구하는 것이므로 투자기간 수익률의 1.5배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
| 레버리지 (leverage)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Leverage)투자로 인해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상기 언급한 사유로 인해 주가하락시 일반 주식형펀드나 인덱스펀드에 비해 펀드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인덱스 투자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 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1.5배 전략 수행 불가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동이나 거래량 부족 등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1.5배 전략을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기 설정금액이 적을 경우 계획된 포트폴리오 구성 불가, 투자신탁 비용 등의 발생으로 인해 일별 수익률이 비교 |

| | |
|---|---|
| | 수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국가위험 | 집합투자재산을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 관련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국내와의 물리적, 시간적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경제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변동에 따른 위험도 있습니다. 일부 외국 국가시장의 증권은 외국인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에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신흥국(중국) 주식시장 투자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투자 시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앞서 설명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중국은 외국인의 투자 제한이 있는 A 시장,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B시장, 홍콩의 H시장 등 복수의 주식시장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동 투자신탁은 주로 홍콩 H 시장에 투자하므로 중국 A 시장 등 기타의 중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성과를 보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폐쇄경제에서 시장경제 도입 과정에 있으며, 정부주도 하에 개방경제로 진행 중에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관료주의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 베이시스 위험 | 투자금액 중 일부가 장내파생상품(주가지수 선물 등)으로 운용되므로 베이시스가 윤용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이시스는 선물가격과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와의 차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물가격은 선물계약 만기일에 다가갈수록 기초자산 가격에 수렴하나, 선물 만기일 전에는 시장환경(수급 등) 등에 따라 베이시스가 변동(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물가격의 등락률과 기초자산의 등락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롤오버 (Roll-Over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가지수선물 등 주식연계파생상품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선물은 현물과는 달리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차기 선물 또는 옵션으로 다시 재투자하여야 하는데 재투자가격이 만기일의 만기상환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이를 롤오버(Roll-over) 위협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 |
| 주가지수선물 가격의 일간 변동률과 HSCEI 일간변동률 차이에 따른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HSCEI 일간등락률의 1.5배를 추구하기 위하여 주가지수선물 등에 투자하게 되는데, 선물가격의 일간변동률과 HSCEI 일간변동률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추적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가격의 일간변동률과 HSCEI 일간변동률 차이에 따른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HSCEI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될 수 있으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일간등락률과 HSCEI 일간등락률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오퍼레이션 위험 |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그 위험이 국내 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
| 자금 송환 위험 | <p>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p> |
|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자신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 및 미국납세의무자 (US Taxpayers) | <p>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p> <p>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p> <p>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 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의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p> <p>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p> <p>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p> |

| | |
|----------------|---|
| | <p>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p> <p>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p> <p>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p> <p>"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쉽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
| 유동성 위험 |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투자대상 자산의 매각이 어려울 경우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펀드규모위험 |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과세제도 변경위험 |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라. 위험에 관한 지표공시

이 투자신탁의 모두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www.feynmanasset.com)를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합니다.

| 위험지표 | 설명 | 공시주기 |
|------|----|------|
|------|----|------|

| 계약금액 | 파생상품 거래금액 | 파생상품 거래 후 익일까지 |
|------------|-------------------------------------|----------------|
|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손익이 발생하는 구간 설명 | |
| 시나리오별 손익구조 | 시장가격이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의 최대손실예상금액 | 매일 |

마.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30.30%**로, 파인만자산운용의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아래)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6단계 등급 체계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닌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특히 레버리지(Leverage)투자로 인해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가하락시 일반 주식형펀드나 인덱스펀드에 비해 펀드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수익률 변동성이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 변화의 폭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 변화의 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계산됩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수익률 변동성은 최직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로 계산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시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인만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변동성(연환산 표준편차)기준)]

| 등급 | 1 매우높은 위험 | 2 높은위험 | 3 다소높은 위험 | 4 보통위험 | 5 낮은위험 | 6 매우낮은 위험 |
|------|-----------------|-----------|-----------------|-----------|-----------|-----------------|
| 표준편차 | 25%초과 | 25%이하 | 15%이하 | 10%이하 | 5%이하 | 0.5%이하 |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파인만자산운용(주)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요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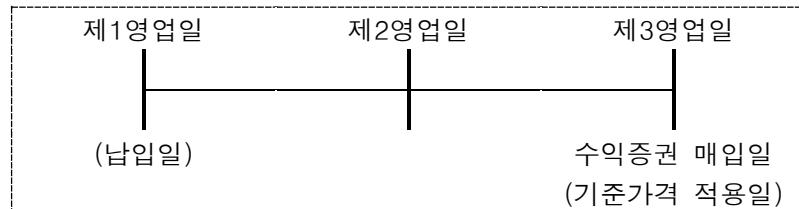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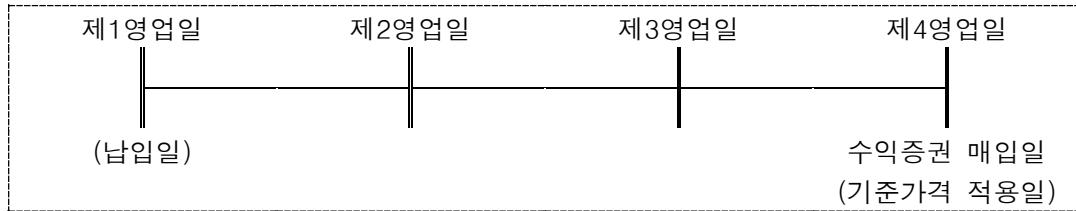
| 구 분 | 가입자격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 인터넷 가입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 종류C1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한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 종류C2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한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 종류C3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한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 동 조 제3항 제3호, 제10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 이상을 매입하는 개인, 500억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인터넷 가입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만,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은 매입청구일을 기준으로 2020.10.05부터 시행합니다.)



- (나) 1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만,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은 매입청구일을 기준으로 2020.10.05부터 시행합니다.)



-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라)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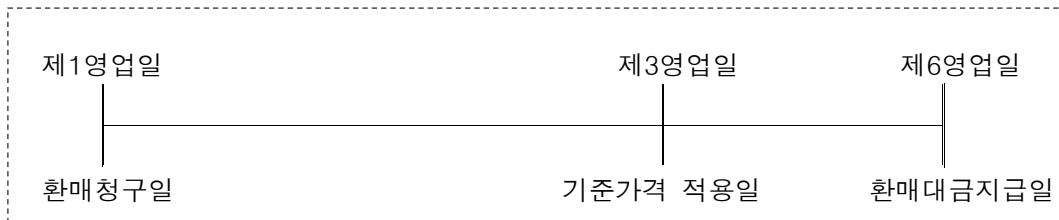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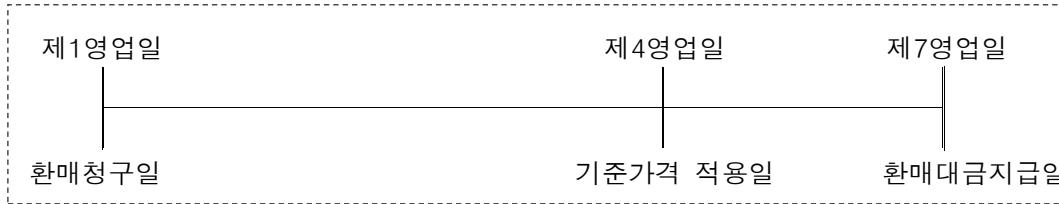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가) 1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나) 13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다) 환매대금은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라)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3시[오후 1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3시[오후 1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행사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4영업일 전일(13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5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부분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⑤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관련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종류 수익증권 간 전환

(1)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자동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일부환매를 포함한다)를 청구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전환을 하지 아니합니다.
- ※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체계가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은 불가 합니다.
- ※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이후 전환하는 경우 판매사간 전산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판매사별로 매영업일 혹은 월별 특정일 또는 주별 특정일 등 전환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 분 | 내 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
| 공시장소 |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feynmanasset.com)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
| 공시주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공시방법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
|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
| 장외파생상품 |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채권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 |

| | |
|---|---|
| | 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비상장채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시에는 모투자신탁의 평가 당일 순자산가액(1좌당 기준가격)으로 평가 |
| 외화표시유가증권으 로 상장주식 또는 상장채권 |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
|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
|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 분 | 수수료 | | | |
|-----------------|------------------|-------------|-------|-------|
| | 선취판매수 수료 | 후취판매수 수료 | 환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 | - | -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 | - |

| | | | | |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 - | - | - | -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 - | - | - | -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 - | - | - | -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 - | - | - | -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기관형(C-f) | - | - | - | - |
| 수수료미정구-온라인형(C-e) | - | - | - | -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랩형(C-w) | - | - |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 | 환매금액의 0.15%이내 | - | - |
| 부과기준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전환시 |

주1)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시 부과 됩니다.

주2) (선취·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종류 | 지급비율(연, %) | | | | | | | | | |
|-----------------------|--------------|------------|------------|--------------------|--------|--------|------------|-------------|--|------------|
| | 집합투자 업자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 총보수 | 기타비용 | 총보수· 비용 | 동종유형 총보수 | 합성총보 수·비용 (피투자집 합투자기 구 보수 포함) | 증권거 래비용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 0.6000 | 0.8000 | 0.0550 | 0.0150 | 1.4700 | 0.0062 | 1.4762 | 0.9000 | 1.6149 | 0.3171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 0.6000 | 0.3500 | 0.0550 | 0.0150 | 1.0200 | 0.0055 | 1.0255 | 0.6100 | 1.1642 | 0.3187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 0.6000 | 1.5000 | 0.0550 | 0.0150 | 2.1700 | 0.0049 | 2.1749 | 1.6000 | 2.3275 | 0.3221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 0.6000 | 1.3500 | 0.0550 | 0.0150 | 2.0200 | 0.0041 | 2.0241 | - | 2.1626 | 0.3214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 0.6000 | 0.9900 | 0.0550 | 0.0150 | 1.6600 | 0.0052 | 1.6652 | - | 1.8061 | 0.3158 |
|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 0.6000 | 0.9000 | 0.0550 | 0.0150 | 1.5700 | 0.0057 | 1.5757 | - | 1.7139 | 0.3175 |

| (C4) |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 0.6000 | 0.0500 | 0.0550 | 0.0150 | 0.7200 | 0.0049 | 0.7249 | - | 0.8775 | 0.322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0.6000 | 0.9000 | 0.0550 | 0.0150 | 1.5700 | 0.0062 | 1.5762 | 1.2400 | 1.7153 | 0.317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 0.6000 | 0.0000 | 0.0550 | 0.0150 | 0.6700 | 0.0021 | 0.6721 | - | 0.8055 | 0.3044 |
|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형(S) | 0.6000 | 0.3000 | 0.0550 | 0.0150 | 0.9700 | 0.0044 | 0.9744 | - | 1.1151 | 0.3179 |
| 지급시기 | 매3개월 후급 | | | | | 사유 발생 시 | - | - | - | - |

주1) 기타비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설정인 종류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의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0.01.20 ~ 2021.01.19]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설정인 종류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의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0.01.20 ~ 2021.01.19]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비용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비용)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 구분 | 1년후 | 2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 264 | 432 | 605 | 969 | 1,992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 169 | 291 | 419 | 688 | 1,45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C4) | 239 | 466 | 661 | 1,050 | 2,21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 90 | 184 | 281 | 488 | 1,08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176 | 357 | 545 | 938 | 2,03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 83 | 169 | 258 | 449 | 999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114 | 233 | 356 | 617 | 1,363 |

- 주1)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모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 등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보수체감형(CDSC)클래스의 경우 기간경과에 따른 판매보수인하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주3) 종류A 및 종류A-e의 판매수수료는 각각 1%, 0.5%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4) 종류S 수익증권은 수익증권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 주5) 종류A 수익증권과 종류C1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고, 종류A-e 수익증권과 종류C-e 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1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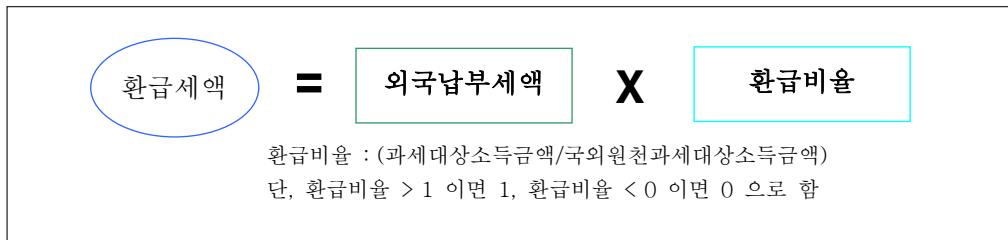
2016년 10월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해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 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해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함

[환해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해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해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가입기한 | 2017년 12월 31일까지 |
| 가입한도 |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

| | |
|----------|---|
| | 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 대상펀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 투자 전용펀드) |
| 세제혜택 |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
| 세제혜택적용기간 | 가입일부터 10년까지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 재무제표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며 참조용으로 기재됩니다.

| 기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 10기 (2020.01.20 – 2021.01.19)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제 9기 (2019.01.20 – 2020.01.19)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제 8기 (2018.01.20 – 2019.01.19)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재무정보는 모두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파인만 차이나Bull 1.5자(파생)

[단위 : 원]

| 항 목 | 대차대조표 | | |
|----------|-------------------------|------------------------|------------------------|
| | 제 10기 (2021.01.19) | 제 9기 (2020.01.19) | 제 8기 (2019.01.19) |
| 운용자산 | 40,104,347,990 | 44,370,274,373 | 44,994,137,857 |
| 증권 | 39,200,176,789 | 43,721,773,474 | 44,613,493,654 |
| 파생상품 | 0 | 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904,171,201 | 648,500,899 | 380,644,203 |
| 기타 운용자산 | 0 | 0 | 0 |
| 기타자산 | 431,933,484 | 187,829,078 | 43,886,051 |
| 자산총계 | 40,536,281,474 | 44,558,103,451 | 45,038,023,908 |
| 운용부채 | 0 | 0 | 0 |
| 기타부채 | 428,401,135 | 186,364,661 | 43,883,676 |
| 부채총계 | 428,401,135 | 186,364,661 | 43,883,676 |
| 원본 | 44,095,478,761 | 49,014,592,130 | 55,199,230,501 |
| 수익조정금 | 187,780,748 | -198,949,871 | -352,794,915 |
| 이익잉여금 | -4,175,379,170 | -4,443,903,469 | -9,852,295,354 |
| 자본총계 | 40,107,880,339 | 44,371,738,790 | 44,994,140,232 |

파인만 차이나Bull 1.5자(파생)

[단위 : 원, %]

| 항 목 | 손익계산서 | | |
|------------|-----------------------------|-----------------------------|-----------------------------|
| | 제 10기 | 제 9기 | 제 8기 |
| | (2020.01.20 - 2021.01.19) | (2019.01.20 - 2020.01.19) | (2018.01.20 - 2019.01.19) |
| 운용수익 | -193,305,616 | 4,981,594,993 | -16,177,712,971 |
| 이자수익 | 2,892,315 | 6,298,469 | 6,418,315 |
| 배당수익 | 0 | 0 | 0 |
| 매매/평가차익(손) | -196,197,931 | 4,975,296,524 | -16,184,131,286 |
| 기타수익 | 0 | 0 | 0 |
| 운용비용 | 0 | 0 | 0 |
| 관련회사 보수 | 0 | 0 | 0 |
| 매매수수료 | 0 | 0 | 0 |
| 기타비용 | 5,931,772,940 | 6,184,680,763 | 11,831,824,781 |
| 당기순이익 | -6,125,078,556 | -1,203,085,770 | -28,009,537,752 |
| 매매회전율 | 0.00 | 0.00 | 0.00 |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대차대조표

투자신탁명 : 파인만 차이나Bull 1.5자(파생)

[단위:원]

| 과 목 | 제10기(2021.01.19) | | 제9기(2020.01.19) | | 제8기(2019.01.19) | |
|--|-------------------------------|----------------|-------------------|----------------|-------------------|----------------|
| | 금 액 | | 금 액 | | 금 액 | |
| 자 산 | | | | | | |
| 운용자산 | | | | | | |
| 현금및예치금 | | | | |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904,171,201 | | 648,500,899 | | 380,644,203 | |
| 2. 예치금 | | | | | | |
| 3. 증거금 | | | | | | |
| 대출채권 | | | | | | |
| 1. 콜론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 | | | | |
| 3. 매입어음 | | | | | | |
| 4. 대출금 | | | | | | |
| 유가증권 | | | | | | |
| 1. 지분증권 | | | | | | |
| 2. 채무증권 | | | | | | |
| 3. 수익증권 | | | | | | |
| 4. 기타유가증권 | | | | | | |
| 파생상품 | | | | | | |
| 1. 파생상품 | | | | | | |
| 부동산과 실물자산 | | | | | | |
| 1. 건물 | | | | | | |
| 2. 토지 | | | | | | |
| 3. 농산물 | | | | | | |
| 4. 축산물 | | | | | | |
| 기타운용자산 | | | | | | |
| 1. 임차권 | | | | | | |
| 2. 전세권 | | | | | | |
| 기타자산 | | | | | | |
|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 | | | | |
| 2. 정산미수금 | | | | | | |
| 3. 미수이자 | | | | | | |
| 4. 미수배당금 | | | | | | |
| 5. 기타미수입금 | | | | | | |
| 6. 기타자산 | | | | | | |
| 7. 수익증권청약금 | | | | | | |
| 자산총계 | | 40,536,281,474 | | 44,558,103,451 | | 45,038,023,908 |
| 부 채 | | | | | | |
| 운용부채 | | | | | | |
| 1. 옵션매도 | | | | | | |
|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 | | | |
| 기타부채 | | | | | | |
|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 | | | | |
| 2. 정산미지급금 | | | | | | |
| 3. 해지료미지급금 | | | | | | |
| 4. 수수료미지급금 | | | | | | |
| 5. 기타미지급금 | | | | | | |
| 6. 기타부채 | | | | | | |
| 부채총계 | | 428,401,135 | | 186,364,661 | | 43,883,676 |
| 자본 | | | | | | |
| 자본부 | | | | | | |
| 1. 원본 | 44,095,478,761 | | | | | |
|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 | | | | | |
| 3. 이월잉여금 | -3,987,598,422 | | | | | |
| (발행좌수 당기: 44,095,478,761 좌 전기: 49,014,592,130 좌 전전기: 55,199,230,501 좌) (기준가격 당기: 909.57 원 전기: 905.28 원 전전기: 815.12 원) | -4,175,379,170 187,780,748 | | -4,642,853,340 | | | |
| 자본총계 | | 40,107,880,339 | | 44,371,738,790 | | 44,994,140,232 |
| 부채와자본총계 | | 40,536,281,474 | | 44,558,103,451 | | 45,038,023,908 |

다. 손익계산서(단위: 원)

소 익 계 산 서

투자신탁명 : 파인만 차이나Bull 1.5자(파생)

[단위:원]

| 과 목 | 제10기(2020.01.20-2021.01.19) | | 제9기(2019.01.20-2020.01.19) | | 제8기(2018.01.20-2019.01.19) | |
|------------------------|-------------------------------|----------------|------------------------------|----------------|------------------------------|-----------------|
| | 금 액 | | 금 액 | | 금 액 | |
| 운 용 수 익 | | | | | | |
| 1. 투자수익 | | | | | | |
| 1. 이 자 수 익 | 2,892,315 | | 6,298,469 | | 6,418,315 | |
| 2. 배당금수익 | | | | | | |
| 3. 수수료수익 | | | | | | |
| 4. 임대료수익 | | | | | | |
|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 | | | | |
| 1. 지분증권매매차익 | | 1,336,071,918 | | 5,487,324,350 | | 5,769,138,474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익 | 1,273,480,377 | | 5,190,517,085 | | | |
| 5. 외환거래/평가차익 | | | | | | |
|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 | | 296,807,265 | | | |
| 7. 기타거래차익 | 62,591,541 | | | | 5,769,138,474 | |
|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 | | | | |
| 1. 지분증권매매차손 | | 1,532,269,849 | | 512,027,826 | | 21,953,269,760 |
|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 | | | | | |
|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 | | | | | |
| 4. 지분증권평가차손 | | | | | 21,398,060,097 | |
| 5. 외환거래/평가차손 | | | | | | |
| 6. 대손상각비 | | | | | | |
|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 | | | | | |
| 8. 기타거래손실 | 1,532,269,849 | | 512,027,826 | | 555,209,663 | |
| 운 용 비 용 | | | | | | |
| 1. 운용수수료 | | 5,931,772,940 | | 6,184,680,763 | | 11,831,824,781 |
| 2. 판매수수료 | | | | | | |
| 3. 수탁수수료 | | | | | | |
| 4. 투자자문수수료 | | | | | | |
| 5. 임대자산관련비용 | | | | | | |
| 6. 기타비용 | 5,931,772,940 | | 6,184,680,763 | | 11,831,824,781 | |
|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 | -6,125,078,556 | | -1,203,085,770 | | -28,009,537,752 |
|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 | -0.138904911 | | -0.024545461 | | -0.507426236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파인만 차이나Bull 1.5자(파생)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0.01.20 - 2021.01.19 | 328 | 260 | 62 | 40 | 78 | 51 | 312 | 245 |
| 2019.01.20 - 2020.01.19 | 365 | 264 | 42 | 31 | 79 | 60 | 328 | 260 |
| 2018.01.20 - 2019.01.19 | 359 | 364 | 154 | 134 | 148 | 136 | 365 | 26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파인만 차이나Bull 1.5자(파)C1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0.01.20 - 2021.01.19 | 5 | 4 | 17 | 11 | 19 | 12 | 3 | 3 |
| 2019.01.20 - 2020.01.19 | 21 | 15 | 15 | 11 | 31 | 23 | 5 | 4 |
| 2018.01.20 - 2019.01.19 | 52 | 51 | 58 | 48 | 89 | 73 | 21 | 15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파인만 차이나Bull 1.5자(파)C2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0.01.20 - 2021.01.19 | 14 | 12 | 3 | 2 | 15 | 11 | 2 | 2 |
| 2019.01.20 - 2020.01.19 | 16 | 13 | 16 | 14 | 19 | 15 | 14 | 12 |
| 2018.01.20 - 2019.01.19 | 12 | 14 | 21 | 19 | 17 | 17 | 16 | 1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파인만 차이나Bull 1.5자(파)C3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0.01.20 - 2021.01.19 | 17 | 16 | 15 | 11 | 19 | 15 | 12 | 11 |
| 2019.01.20 - 2020.01.19 | 8 | 7 | 15 | 13 | 6 | 5 | 17 | 16 |
| 2018.01.20 - 2019.01.19 | 50 | 59 | 6 | 6 | 48 | 51 | 8 | 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파인만 차이나Bull 1.5자(파)C4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0.01.20 - 2021.01.19 | 54 | 50 | 15 | 12 | 13 | 10 | 56 | 52 |
| 2019.01.20 - 2020.01.19 | 56 | 48 | 7 | 6 | 9 | 8 | 54 | 50 |
| 2018.01.20 - 2019.01.19 | 22 | 27 | 45 | 47 | 11 | 12 | 56 | 48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파인만 차이나Bull 1.5자(파)Ce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0.01.20 - 2021.01.19 | 111 | 87 | 41 | 26 | 56 | 38 | 95 | 74 |
| 2019.01.20 - 2020.01.19 | 124 | 89 | 34 | 25 | 48 | 35 | 111 | 87 |
| 2018.01.20 - 2019.01.19 | 75 | 76 | 141 | 125 | 93 | 79 | 124 | 8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파인만 차이나Bull 1.5자(파)Cw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0.01.20 - 2021.01.19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9.01.20 - 2020.01.19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8.01.20 - 2019.01.19 | 0 | 0 | 0 | 0 | 0 | 0 | 0 | 0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파인만 차이나Bull 1.5자(파)Ae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0.01.20 - 2021.01.19 | 12 | 11 | 5 | 4 | 6 | 4 | 11 | 11 |
| 2019.01.20 - 2020.01.19 | 11 | 10 | 3 | 3 | 3 | 3 | 12 | 11 |
| 2018.01.20 - 2019.01.19 | 7 | 9 | 10 | 11 | 6 | 6 | 11 | 10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파인만 차이나Bull 1.5자(파)S

[단위:억좌, 억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분수) | 금액 |
| 2020.01.20 - 2021.01.19 | 2 | 2 | 1 | 1 | 1 | 1 | 2 | 2 |
| 2019.01.20 - 2020.01.19 | 3 | 3 | 3 | 2 | 4 | 3 | 2 | 2 |
| 2018.01.20 - 2019.01.19 | 2 | 2 | 3 | 3 | 1 | 1 | 3 |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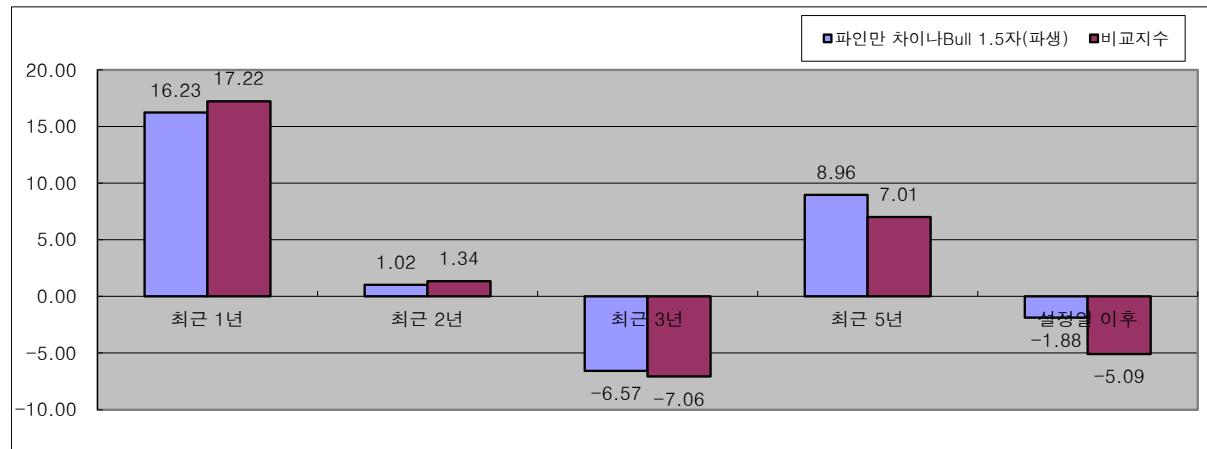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운용펀드 기준

| 기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20.05.21 ~ 21.05.20 | 19.05.21 ~ 21.05.20 | 18.05.21 ~ 21.05.20 | 16.05.21 ~ 21.05.20 | 11.01.20 ~ 21.05.20 |
| 파인만 차이나 Bull 1.5 자(파생) | 16.23 | 1.02 | -6.57 | 8.96 | -1.88 |
| 비교지수 | 17.22 | 1.34 | -7.06 | 7.01 | -5.09 |
| 수익률변동성(%) | 29.16 | 29.58 | 28.92 | 29.16 | 29.16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 14.58 | -0.42 | -7.93 | 7.39 | -3.31 |
| 비교지수 | 17.22 | 1.34 | -7.06 | 7.01 | -5.09 |
| 수익률변동성(%) | 29.16 | 29.58 | 28.92 | 29.16 | 29.1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 13.81 | -1.10 | -8.57 | 6.65 | -3.78 |
| 비교지수 | 17.22 | 1.34 | -7.06 | 7.01 | -4.58 |
| 수익률변동성(%) | 29.16 | 29.58 | 28.92 | 29.16 | 29.1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 13.98 | -0.95 | -8.43 | 6.82 | -1.95 |
| 비교지수 | 17.22 | 1.34 | -7.06 | 7.01 | -3.28 |
| 수익률변동성(%) | 29.16 | 29.58 | 28.92 | 29.16 | 29.1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14.38 | -0.60 | -8.10 | 7.20 | -1.92 |

| | | | | | |
|-----------------------|-------|-------|-------|-------|-------|
| 보수체감형(C3) | | | | | |
| 비교지수 | 17.22 | 1.34 | -7.06 | 7.01 | -3.23 |
| 수익률변동성(%) | 29.16 | 29.58 | 28.92 | 29.16 | 29.1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 14.48 | -0.51 | -8.02 | 7.29 | 1.57 |
| 비교지수 | 17.22 | 1.34 | -7.06 | 7.01 | 0.57 |
| 수익률변동성(%) | 29.16 | 29.58 | 28.92 | 29.16 | 29.16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14.47 | -0.52 | -8.02 | 7.29 | -3.41 |
| 비교지수 | 17.22 | 1.34 | -7.06 | 7.01 | -5.09 |
| 수익률변동성(%) | 29.16 | 29.58 | 28.92 | 29.16 | 29.1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 15.50 | 0.37 | -7.18 | 8.25 | -1.71 |
| 비교지수 | 17.22 | 1.34 | -7.06 | 7.01 | -3.97 |
| 수익률변동성(%) | 29.16 | 29.58 | 28.92 | 29.16 | 29.16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 15.08 | 0.02 | -7.51 | 7.87 | -0.66 |
| 비교지수 | 17.22 | 1.34 | -7.06 | 7.01 | -2.58 |
| 수익률변동성(%) | 29.16 | 29.58 | 28.92 | 29.16 | 29.16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15.14 | 0.07 | -7.47 | 7.92 | 1.41 |
| 비교지수 | 17.22 | 1.34 | -7.06 | 7.01 | -0.17 |
| 수익률변동성(%) | 29.16 | 29.58 | 28.92 | 29.16 | 29.16 |

주 1) 비교지수 : $(1.5 * [\text{HSCEI}]) + (-0.5 * [\text{한은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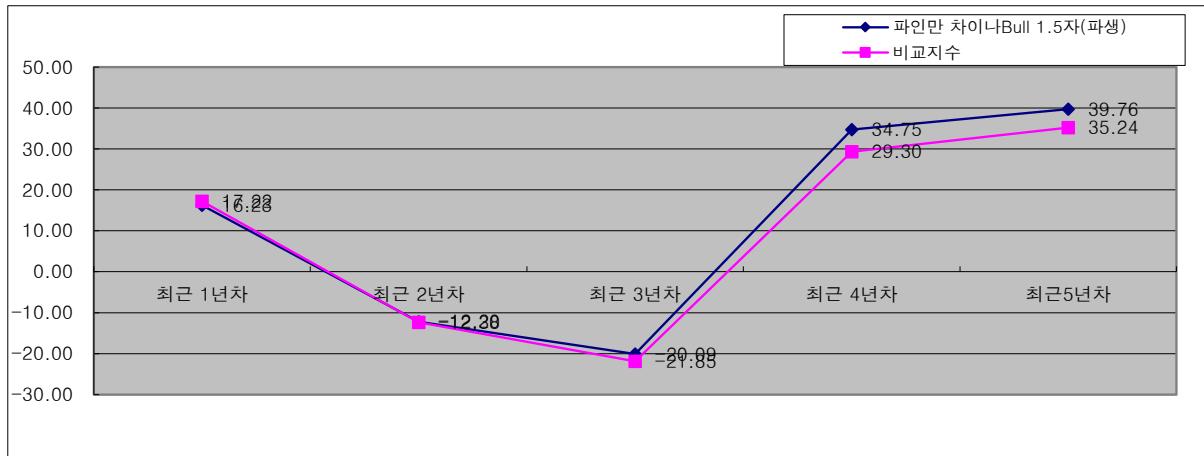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운용펀드 기준

| 기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20.05.21 ~ 21.05.20 | 20.05.21 ~ 21.05.20 | 19.05.21 ~ 20.05.20 | 18.05.21 ~ 19.05.20 | 17.05.21 ~ 18.05.20 | 16.05.21 ~ 17.05.20 |
| 파인만 차이나 Bull 1.5 자(파생) | 16.23 | -12.20 | -20.09 | 34.75 | 39.76 |
| 비교지수 | 17.22 | -12.38 | -21.85 | 29.30 | 35.24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 14.58 | -13.46 | -21.31 | 32.89 | 37.77 |
| 비교지수 | 17.22 | -12.38 | -21.85 | 29.30 | 35.2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 13.81 | -14.05 | -21.88 | 31.99 | 36.83 |
| 비교지수 | 17.22 | -12.38 | -21.85 | 29.30 | 35.2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 13.98 | -13.92 | -21.76 | 32.21 | 37.04 |
| 비교지수 | 17.22 | -12.38 | -21.85 | 29.30 | 35.2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 14.38 | -13.62 | -21.46 | 32.67 | 37.52 |
| 비교지수 | 17.22 | -12.38 | -21.85 | 29.30 | 35.2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 14.48 | -13.54 | -21.39 | 32.78 | 37.64 |
| 비교지수 | 17.22 | -12.38 | -21.85 | 29.30 | 35.2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14.47 | -13.54 | -21.38 | 32.77 | 37.64 |
| 비교지수 | 17.22 | -12.38 | -21.85 | 29.30 | 35.24 |
| 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 15.50 | -12.77 | -20.64 | 33.90 | 38.85 |
| 비교지수 | 17.22 | -12.38 | -21.85 | 29.30 | 35.24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 15.08 | -13.08 | -20.93 | 33.46 | 38.38 |

| | | | | | |
|-----------------|-------|--------|--------|-------|-------|
| 비교지수 | 17.22 | -12.38 | -21.85 | 29.30 | 35.24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15.14 | -13.03 | -20.89 | 33.52 | 38.44 |
| 비교지수 | 17.22 | -12.38 | -21.85 | 29.30 | 35.24 |

주 1) 비교지수 : $(1.5 * [\text{HSCEI}]) + (-0.5 * [\text{한은기준금리}])$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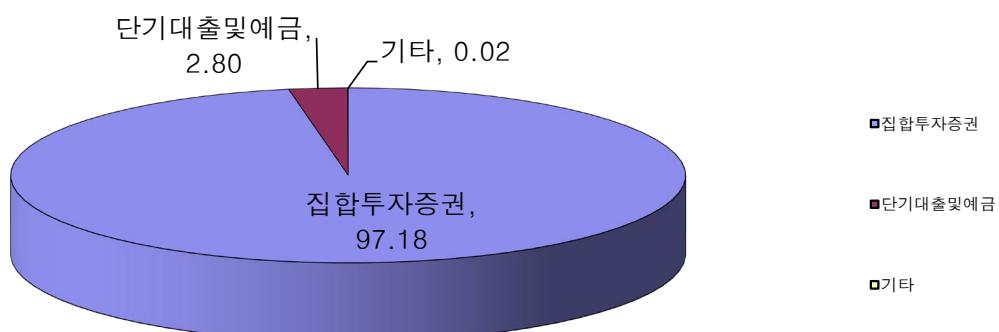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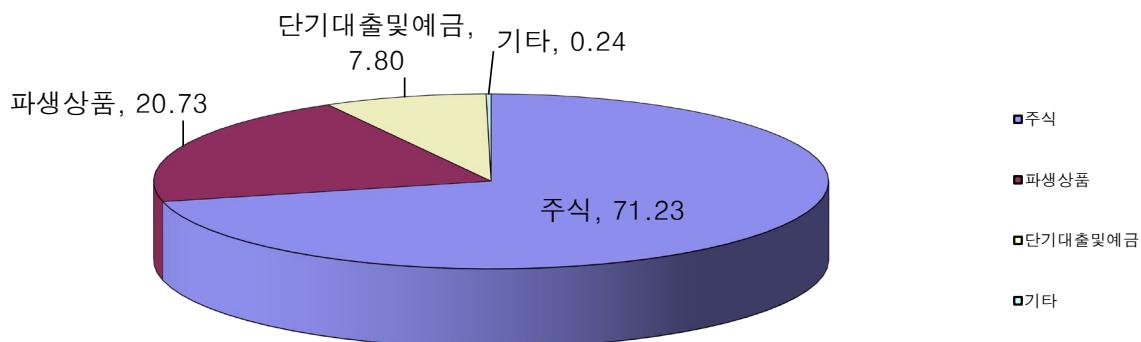
[2021.04.19 현재 / 단위 : 억원, %]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KRW | 0 | 0 | 0 | 342 | 0 | 0 | 0 | 0 | 0 | 10 | 0 | 352 |
| | (0.00) | (0.00) | (0.00) | (97.18) | (0.00) | (0.00) | (0.00) | (0.00) | (0.00) | (2.80) | (0.02) | (100.00) |
| 합계 | 0 | 0 | 0 | 342 | 0 | 0 | 0 | 0 | 0 | 10 | 0 | 352 |
| | (0.00) | (0.00) | (0.00) | (97.18) | (0.00) | (0.00) | (0.00) | (0.00) | (0.00) | (2.80) | (0.02) | (100.00) |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 현황]



[2021.04.19 현재 / 단위: 억원, %]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KRW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 | 1 | 6 |
|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86.19) | (13.81) | (2.00) |
| HKD | 244 | 0 | 0 | 0 | 68 | 3 | 0 | 0 | 0 | 22 | 0 | 337 |
| | (72.50) | (0.00) | (0.00) | (0.00) | (20.23) | (0.87) | (0.00) | (0.00) | (0.00) | (6.40) | (0.00) | (98.00) |
| USD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100.00) | (0.00) | (0.00) |
| 합계 | 244 | 0 | 0 | 0 | 68 | 3 | 0 | 0 | 0 | 27 | 1 | 343 |
| | (71.23) | (0.00) | (0.00) | (0.00) | (19.88) | (0.85) | (0.00) | (0.00) | (0.00) | (7.80) | (0.24) | (1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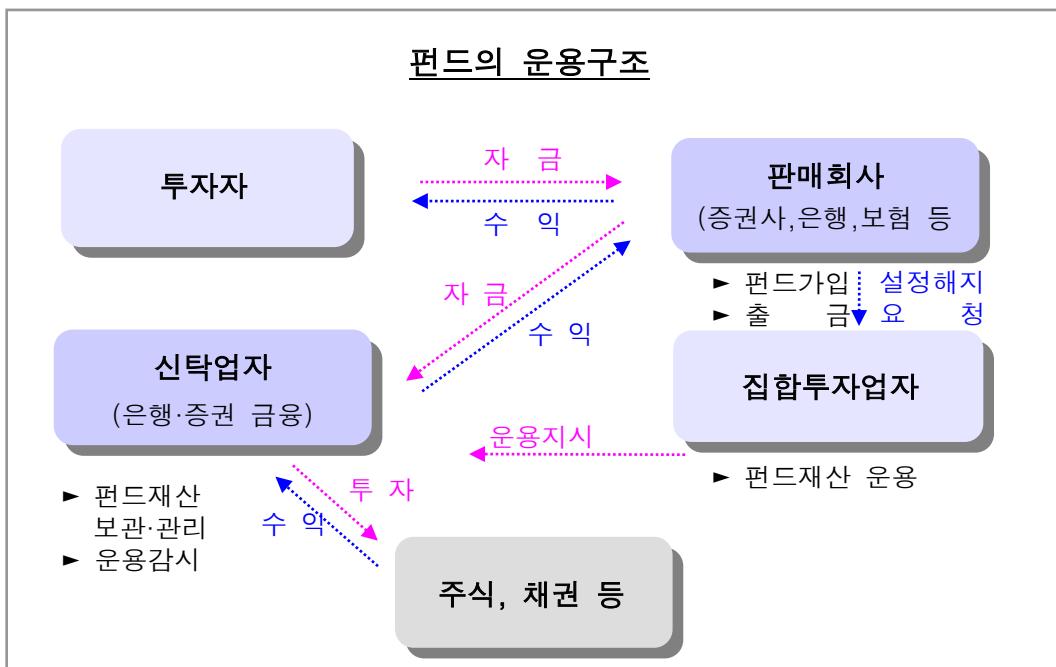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 | |
|----------|---|
| 회사명 | 파인만자산운용(주) |
|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SIMPAC 빌딩 3층 연락처 : 02-3703-9800 인터넷 홈페이지 : www.feynmanasset.com |
| 회사 연혁 | <p><외환코메르쓰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8.04.06 한국증권투자자문(주) 설립 1997.07.08 외환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1999.05.28 외환코메르쓰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p><랜드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9.10.05 범한투자자문(주) 설립 1996.08.24 장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1998.12.29 국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02.05.09 Morgan stanley group에 매각 2002.05.28 랜드마크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05.04.26 외환코메르쓰투자신탁운용(주)과 합병 <p><ING 자산운용 주식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09.08 ING자산운용(주) 설립 2007.10.01 랜드마크자산운용(주)과 합병 2013.11.27 Macquarie Investments 3 Limited의 인수 <p><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12.27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21.04.09 파인만1호주식회사가 100% 지분인수 |

| | |
|--------|---|
| | <파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2021.04.09 파인만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
| 자본금 | 15,049,570,000원 |
| 주요주주현황 | 파인만1호주식회사: 지분율 100% |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 대차대조표(억원) | | | 요약 손익계산서(억원) | | |
|------------|-----------|-----------|---------------|-----------|-----------|
| 계정과목 | '20.03.31 | '19.03.31 | 계정과목 | '20.03.31 | '19.03.31 |
| 현금및예치금 | 209.2 | 232.1 | 영업수익 | 104.2 | 140.7 |
|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4.7 | 6.1 | 영업비용 | 125.0 | 127.9 |
| 유형자산 | 5.9 | 0.3 | | | |
| 무형자산 | 4.3 | 3.7 | | | |
| 기타자산 | 25.3 | 28.5 | | | |
| 자산총계 | 249.4 | 270.7 | 영업이익(손실) | (20.8) | 12.8 |
| 충당부채 | 4.4 | 2.2 | 영업외수익 | 1.0 | 1.8 |
| 기타부채 | 64.1 | 58.2 | 영업외비용 | - | - |
| 부채총계 | 68.5 | 60.4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19.8) | 14.6 |
| 자본금 | 149.7 | 149.7 | 법인세비용 | 8.1 | 3.2 |
| 자본잉여금 | 18.0 | 18.0 | 당기순이익(손실) | (27.9) | 11.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7) | (0.2) | 기타포괄손익 | (1.5) | (0.2) |
| 이익잉여금 | 14.9 | 42.8 | | | |
| 자본총계 | 180.9 | 210.3 | 당기총포괄손익 | (29.4) | 11.2 |

라. 운용자산 규모(2021.05.20. 현재)(억원)

| 구분 | 증권집합투자기구 | | | | | 단기금융 | 특별자산 | 투자일임 | 총계 |
|-----|----------|-----|-------|------|-----|-------|-------|------|--------|
| |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 재간접형 | 파생형 | | | | |
| 수탁고 | 3,302 | 65 | 1,365 | 3 | 820 | 1,914 | 4,284 | 0 | 11,755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해외 업무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한국씨티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 연락처 : 1588-5753 |
|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 www.citibank.co.kr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신탁업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신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⑧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의 여부
-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신한아이타스(주) |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 22층 연락처 : 02-2180-0400 |
|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 www.shinhanaitas.com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가.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 | KIS채권평가 | NICE P&I(주)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02-399-33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35-4 02-3215-14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70길 19(여의도동) 4층 02-398-3900 |
|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 www.koreabp.com | www.bond.co.kr | www.nicepni.com |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중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 총좌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 한 것으로 봅니다.
 -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3)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제5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 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관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 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증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 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

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투자자들은 숙려기간 등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① 녹취·숙려제도

- 판매회사는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등”이라 합니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숙려기간”이라 합니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 투자권유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청약등을 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는 숙려기간동안 청약등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는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숙려기간동안 청약등을 집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여야만 청약등이 집행됩니다.
-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제도는 관련법 시행일인 2021년 05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 되어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고(당사 홈페이지 공시 등)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집합투자업자가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 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임의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임의 해지의 방법 이외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 또는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증개

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헤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종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그 밖에 법시행령제92조제3항에 정하는 사항
-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 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 제247조제5항에 정해진 사항
- 5) 그 밖에 법시행령제270조제2항에 정해진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 자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feynman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투자운용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 ·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 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주식 관련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중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1)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계약금액 및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 분 | 내 용 |
|------------|--|
| <투자증권거래> | <p>①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증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② 선정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적인 증개회사 평가를 통해 증개회사와 증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 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기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 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 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증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증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 5. 증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증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증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증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p>③ 증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증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증개회사로 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증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장내파생상품거래> |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용 어 | 내 용 |
|------------------|---|
| 집합투자업자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증권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펀드 혹은 집합투자기구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고 불립니다. |
| 신탁업자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개방형(집합투자기구) |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
| 폐쇄형(집합투자기구) |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
| 추가형(집합투자기구) |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
| 단위형(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금리스왑 |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 |

| | |
|--------|---|
| | 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신탁보수 |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성과보수 |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규약(또는 계약)에 의거 펀드의 성과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추가적으로 보수(성과보수)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를 성과보수가 없는 펀드와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레버리지효과 |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
| 선물환거래 |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해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
| 수익자총회 |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투자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증권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한다는 의미입니다. |
| 수탁고 |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
| 실물자산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 | |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전환사채 |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
| 판매수수료 | 투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리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
| 설정 |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
| 해지 |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 환매 | 고객이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수익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
| 환매조건부채권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 환해지 |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해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

[별첨]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항셍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지수) 사용
유의 사항

항셍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지수(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는 항셍데이터서비스(Hang Seng Data Services Limited)로부터 사용권(License)을 수여받은 항셍인덱스(Hang Seng Indexes Company Limited)가 산출하고 공표한 지수입니다. 지수에 대한 상표와 명칭은 항셍데이터서비스의 소유입니다. 항셍인덱스와 항셍데이터서비스는 파인만 차이나 블 1.5x 증권투자신탁("펀드")과 관련하여 본 지수를 사용하고 참조할 수 있는 권리를 파인만자산운용에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항셍인덱스와 항셍데이터서비스는 중개회사, 펀드의 수익자 및 제3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장, 진술 또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1) 본 지수, 그 산출 결과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 (2) 본 지수, 그 구성 종목 및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절성; (3) 어떤 목적이든 본 지수, 그 구성 종목 및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 등. 항셍인덱스와 항셍데이터서비스는 본 지수와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보장, 진술 및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본 지수 및 관련 계산 방식, 종목 및 인자의 산출 및 구성에 대한 절차 및 근거는 언제든지 항셍인덱스에 의해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항셍인덱스 또는 항셍데이터서비스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펀드와 관련하여 파인만자산운용의 본 지수 사용 및/또는 참조; (2) 항셍인덱스의 본 지수의 산출과 관련한 부정확성, 생략, 오류; (3) 본 지수의 산출과 관련하여 제3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부정확성, 생략, 실수, 오류 또는 불충분성; (4) 상기 사항에 대한 결과로서 중개회사, 펀드의 수익자 및 제3자가 본 펀드를 거래하면서 입은 경제적 손실 및 그 외 손실 등. 중개회사, 펀드의 수익자 및 제3자는 본 펀드와 관련하여 항셍인덱스 및/또는 항셍데이터서비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법적 절차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펀드를 거래하는 중개회사, 펀드의 수익자 및 제3자는 본 면책사항을 잘 숙지하고, 항셍인덱스와 항셍데이터서비스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본 면책사항은 중개회사, 펀드의 수익자 및 제3자와 항셍인덱스 및/또는 항셍데이터서비스 간에 계약 또는 준계약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